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팬오션 주식회사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制定 2015.08.12

改定 2022.05.09

改定 2026.03.27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상법 제 393 조의 2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공정거래법"이라 한다) 제 26 조에 근거하여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성 및 권한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3인 이상의 독립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 (개정 2026.03.27)
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회 권한)

- ①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,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호의 대규모내부거래(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)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. (개정 2026.03.27)
 - 1.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 - 2.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 - 3.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 - 4.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최대주주,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대규모내부거래의 승인

2. 기타 상법 제 542 의 9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래행위의 승인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보고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최초소집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15.08.12 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05.09 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5 월 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03.27 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 3 조의 용어 변경(사외이사→독립이사)의 개정 규정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.